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 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나. 채권추심
- 다. 마케팅
-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 성명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등

나)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수집된 경우에 한하여 관리함)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수집된 경우에 한하여 관리함)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다) 금융질서문란정보(관련업무와 관련하여 수집된 경우에 한하여 관리함)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능력정보(관련업무와 관련하여 수집된 경우에 한하여 관리함)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 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관련업무와 관련하여 수집된 경우에 한하여 관리함)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신용정보 제3자 제공의 경우에 관한 사항

가.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 신용정보회사: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당사는 2016년 2월현재 마케팅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보유 및 이용기간

상품폐쇄 후 5년까지 보관 및 이용하며 다만,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세법 등의 관련 법규상의 의무이행 및 기타 감독기관의 요청·명령에 따른 제출할 의무이행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제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상품폐쇄 후 5년 경과 시 파기하며, 이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월간거래내역 및 잔고통보, 기타 우편물 발송 : 빌포스트
-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 한국예탁결제원
- 고객원장 전산관리 : 코스콤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

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케이씨지자산운용 ARS(전화번호 1588-5533)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

성명 : 정희경 수석

부서 및 직책 : Compliance 준법감시인

전화번호 : 02-6320-3092